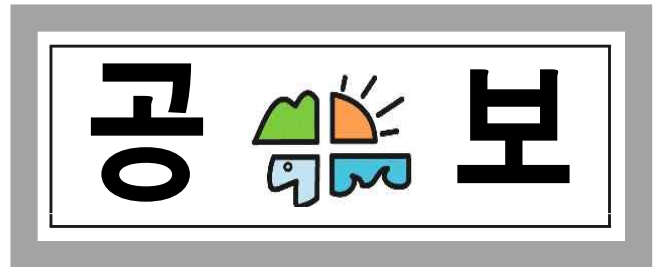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912호 2015년 1월 2일(금)

조 례

-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..... 2
-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..... 4

공 고

- 속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..... 6

회 란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 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1월 2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조례 제2388호

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의 “법 제5조의2규정에 의해”를 “법 제6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
조 제2항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
“법 제5조의2규정에 의해”를 “법 제6조에 따라”로 한다.

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【별표 7】

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

(제28조 제5항 관련)

구 분	처리비용
음식물류 폐기물	86,650원/톤

◇ 개정이유

2005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9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동결되어 공기업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원활한 공기업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음식물류 처리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
속초시 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1월 2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조례 제2389호

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

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[별표 5]

분뇨 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(제19조제1항 관련)

1. 수거식화장실

부과기준	수 수 료(원)		
	수집·운반	처리	계
ℓ 당	13.5	2.3	15.8

2.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

부과기준	수 수 료(원)		
	수집·운반	처리	계
ℓ 당	<u>19</u>	2.3	<u>21.3</u>

※ “수집·운반” 은 분뇨의 수집·운반(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)수수료를 말함

※ “처리” 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

◇ 개정이유

하수관거 우·오수 분리공사로 인한 분뇨 수집·운반의 물량 감소 및 인건비를 비롯한 원가 상승으로 분뇨 수집·운반 업체의 경영 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수수료를 인상코자 함

속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월 2일

속 초 시 장

속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명 변경에 따라 조례상 부서장 및 담당 직위명 변경
- 나. 서면심의 진행시 검토의견 제출 위원에게 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확보(조례상에 구문을 추가하여 법령해석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함)

2. 주요내용

- 가. 부서장 직위명 변경(안 제3조)
- 나. 담당 직위명 변경(안 제12조)
- 다. 서면심의시 검토수당 지급안 추가(안 제13조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및 개인은 2015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청 안전방재과(전화: 033-639-2988, 팩스: 033-639-2588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연락처
- 다. 기타 의견

붙임 : 속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속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속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재난산림관리과장”을 “자연재해 업무담당 부서장”으로 하고, “위원으로 구성하되”를 “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재난담당”을 “담당”으로 한다.

제13조 전체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회에 참석한 속초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, 서면검토시 검토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회의소집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위원의 위촉 및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<u>위원으로 구성하되</u>,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.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, 부위원장은 <u>재난산림관리과장</u>으로 한다. ③ (생 략)	제3조(위원의 위촉 및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<u>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</u>,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.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, 부위원장은 <u>자연재해 업무담당 부서장</u>으로 한다. 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(간사) ① (생 략) 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관장하는 <u>재난담당</u>이 된다. ③ (생 략)	제7조(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관장하는 <u>담당</u>이 된다. ③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수당과 여비)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13조(수당과 여비) 위원회에 참석한 속초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, 서면검토시 검토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회의 소집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.